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정상천
 편집 : 문화공보관 심계섭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748 호
 1980. 1.25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393 호 :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티소부속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	3
제 1394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4
제 1395 호 :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4
제 1396 호 :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	10
제 1397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11

◎ 규 칙

제 1840 호 :	서울특별시잡규칙의사규칙중개정규칙	11
------------	-------------------------	----

◎ 고 시

제 20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과지적승인	12
----------	----------------------------	----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2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3
제 2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고시	13
제 24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및시설 (공원도로) 지적승인	14
제 25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5
제 2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결정및지적승인	15
제 2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6
제 28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및지적승인	16
제 29 호 :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17

㉠ 공 고

제 21 호 :	도시계획사업 (청사부지및도로확장) 실시계획공람공고	18
제 24 호 :	구로토지구회정리사업계획 변경공람공고	22
제 25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 실효공고	22
제 26 호 :	KS 표시허가취소공고	23
제 27 호 :	광진병에방울위한방건단속공고	24
제 29 호 :	분노특별수거지역제외 (비수거) 지역공고	24

조 례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부속병원 수가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0.1.2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 서울특별시조례제 1393 호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 관리소 부속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 건강관리소 부속병원수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기본진료료접수료

(1 점 : 10 원)

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료보험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 기준에 의한다.

③제 2 항의 진료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별표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 2 항의 진료수가 기준 및 약가 기준에 의한다. (단 의료보험 수혜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 대하여는 진찰료의 30%를 감면한다)

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입원환자의 식사대는 당해년도 예산상의 급식액에 1 환을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분 류	접 수	비 고
○ 진찰권료	30	기초진료료 (간단한처치및치방진료포함) 는 진찰권료와 동시에 청구할 수 없고, 진료행위가 이루어질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기초진료료	50	
○ 영안실료	200	영안실료는 보호자측의 귀책 사유가 없는한 3일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분 류	점 수	비 고
○ 재증명료 가. 명사봉 진단서 나. 상해진단서 다. 신체검사서 라. 시체부검표 마. 기. 발급증명서 사본 (1건당)	100 300 300 2,000 20	재증명 발급수수료는 이표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초진료료와 동액으로 하고, 별도의 검사료 요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검사료를 가산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394 호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조례중 다습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건축국장으로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도시정비국장 및 도시정비 담당관"을 "건축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80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조례제 1395 호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 라한다) 산업체 근로 청소년중 경제적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의 취학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근로청소년 장학

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교육법 제 103 조의 4
및 동법 제 107 조의 4 규정에 의하
여 산업체에 근로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야간 특별학급(이
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에 취학
하는 학생으로 하며, 장학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지급순위)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산업체 특별학급 학생중 산업
체의 휴·폐업, 극심한 불경기등
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
하기 곤란한 학생. 다만, 관계
기관의 취업 알선을 정당한 사
유없이 거부한 학생은 제외한다.
2. 기타 산업체 근로청소년중 경
제적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
거나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근로청소년

② 장학금은 제 1 항 제 1 호 해당자
는 전원지급하면 제 1 항 제 2 호

해당자는 장학기금의 범위내에서 시
장이 따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 4 조 (대상자 추천절정) ① 특별학급
설치 학교의 장은 매 분기별로 교육
비 납부 마감일로 부터 5 일 이내에
교육비 미납학생명단과 소속산업체명
을 관할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거 통보한다
② 관할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은 미납
사유를 검토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
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비 납부
마감일로 부터 15 일 이내에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
한다.

③ 시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추
천된 자를 장학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회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 절차에 준하거나
시장이 결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
라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 5 조 (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
의 위원장은 제 1 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포

함하여 15일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관리관
2. 산업국장
3. 보건사회국장
4. 새마을담당관
5. 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6. 노동청 지방사무소장
7. 서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8. 특별학급 설치학교장 기업체 대표등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위원회의 의안정리 기타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업과장과 교육위원회 실업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도행정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동액의 수당 기타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장학금 지급) ①장학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수업료, 육성회비, 입학금등 학교에 납부하는 공납금을 우선 지급하고 장학기금의 여유가 있는 때에는 교과서, 학용품대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은 지급대상자 결정후 5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에게 전달하며 별지 제 3 호 서식의 장학증서도 동시에 전수한다.

③학교장이 장학금을 전달 받았을 때에는 해당학생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 7 조 (장학기금 조성관리) ①장학기금은 시장 책임하에 조성하며 그 재원은 시의 일반회계 진출금, 새마을성금, 기업가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②장학기금은 은행에 예치하며 그 이차로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8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시식)

교육비미납학생명단 (0 0 년 0 분기)

수신 : 노동청 0 0 지방사무소장

근로 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0 0 년도 0 분기 교육비미납학생 명단을 통보합니다.

연 번	학 년 반	성 명	소 속 산 업 체	학 비 미 납 액	비 고
19 . . .					

(별지 제 2 호 서식)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수신 : 0 0 0 시도지사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조례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0 0 년도 0 분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합니다.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산 업 체 명	추 천 사 유

(별지 제 3 호 서식)

장 학 증 서

소 속 0 0 학 교

 0 학 년 0 반

성 명 0 0 0

위 학생은 00년도 0분기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임을

증명함.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80년 1월 30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96 호

서울특별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중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
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 및 면허세 부과 징수사무는
자동차등록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 2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1 조 (과세표준 및 세율) 등록세
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법제 130
조 내지 법제 149 조의 규정에 의
한다.

제 22 조 제 1 항중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자동차등록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로 한다.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6 조 (납세의무자)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법제 173 조의 규정에 의
한다.

제 8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1 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
세표준은 법제 247 조의 규정에 의
한다.

제 8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3 조 (납기) 법제 250 조 제 3 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환의 납세의
무자는 법제 248 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
터 7월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
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 3974 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
행일로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
나 부과하여야 할 시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상천

1980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97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
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
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수당지급액) ①지하철본부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조정수
당지급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이 하고 의무직공무
원의 조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
정상의 일반직공무원 조정수당액과
동액을 지급한다.

②제 1 항의 수당을 제외한 기타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
소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지급
액의 상한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의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잠급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법정급여외의
기타지급액과 동액의 기타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방법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잠
급직 의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잠급직 의사규칙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규칙 제 1840 호

서울특별시 잠급직의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잠급직의사규칙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중 '수련의 (인턴, 엑스턴
및 레지던트)'를 '전공의 (인턴
및 레지던트)'로 하고,
제 2 항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
다.

제 3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전공의의 총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제 1 항중 '수련의'를 '전공
의'로 한다.

제 5 조 및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조정수당, 기술수당) 일반의
및 전문의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지방공무원 보수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

-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제12조 및 동법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463 호(79.12.10)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하였기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 23.

서울특별시장

규정상외의 조정수당 및 기술수당과 동액의 조정수당 및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조 (법정급여외의 지급액) 일반의 및 전근의에 대하여는, 재정국립병원의 동일직급의사의 지급액 (법정급여를 제외한 기타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각병원의 특수성과 의사의 자질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노선조치

구분	종류	구분	폭원	연장	기 집	총 집	비 고
건설	소로	3		64m	시흥동 산 53	시흥동 산 53	
지정	"	"		104"	수유동 351	수유동 산 61	
변경	"	"		108"	"	"	위치변경
지정	"	2		60"	하월곡동 67	하월곡동 67	
변경	"	"		" "	"	"	위치변경 지적승인
지정	"	3		75"	장위 76-199	장위동 76- 200	
변경	"	"		" "	"	"	폐지

현금도면 도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80.1.10)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도시계획법상 권한위임에 따라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25

서울특별시 장

가. 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결 정	학 교	성북구 정능동 산 17-6 일대	24,382㎡ (7,375 평)	학 교 법 인 성 한 학 원

별첨도면 생략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 3 호 (80. 1.10) 로 실시계획공람 공고된 세광상업전수학교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사업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세광상업전수학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25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하계동 산 16-38 외 5 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세광상업전수학교신설

다. 사업규모 및 면적 : 9,554 (2,890 평)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하계동 산 16-38. 세광상업전수학교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사업실시일가 7.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 토지개복조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비고
산 16-4	임	39,868	서대문구 홍제동 332-12 최정식의 2인	
산 16-19	"	3,769	" 녹빈동 28-24 임창호	
산 16-30	무	무	무	
산 16-38	임	7,170	성동구 성수동 13-441 김광철	
28-4	대	79	" 28-4 이명숙	
28-7	대	99	" 28-7 이명숙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시설 (공원,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 호 (80.1.22)
에 의거 시설결정된 서울특별시 마
포구 관내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
지조성사업) 및 시설 (공원,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

획법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463 호
(79.12.10) 에 의거 이를 회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인다.

1980. 1. 26.

서울특별시 장

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적승인조서

구분	사업 (시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건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마포구 성산동 산 11-47 일대	3,478.8 평	
"	도 로	"	920.7 평	단지내 6-8m
"	어린이공원	"	169.6 평	단지내

민첩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5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1. 건설부고시제 337 호 ('79.9.20)
- 건설부고시제 390 호 ('79.10.31)
- 건설부고시제 416 호 ('79.11.20)

로 변경결정된 서울도시계획 용도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 13조에 의거 지적승
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

1980.1.26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조서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주거지역-상업지역	용산구동자동 14 번지일대	44,400	
자연녹지지역- "	강서구신정동 748 번지일대	114,050	
주거지역-자연녹지 지역	강남구취락구조개설사업 지구내	95,000	종열, 잔디 개리, 암산
자연녹지지역-주거 "	영등포구시흥동산 84-2 일대	5,391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변경
결정및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를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동법시행령 7 조 2 및 건설부
고시 463 호 (79,12.10) 와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변경 통례규정 5 조

2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정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1980.1.29

서울특별시장

○ 인부민경결정및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40	35 m	3,820 m	적선동 (광장3호)	세브란스병원	신촌동 2-192의 면적 126㎡를 도로 에 포함시킨
변경	"	"	40	"	"	"	"	

* 벌침도면표시와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 제 387 호 (78.8.3) 로 결정된바 있는 당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29

서울특별시장

○ 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대로	3	84	25 m	3,250 m	화곡동	오정동	신월동-오정동간 1,450 m지적승인

* 벌침도면표시와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8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결정 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41호(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1980.1.29
 서울특별시장
 가 , 공용의청사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공용의청사	강남구서초동영동 1 지구 2 공구 444 부력일대	98,550 m ²	제 1 공용의 청사부지
신설	"	강남구삼성동영동 2 지구 2 공구 300 부력일대 및 449,450 부력	74,410 m ²	제 2 공용의 청사부지

* 별첨도면표시와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9 호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1 . 서울특별시고시 제 14 호 (80.1.19)
 로 결정고시된 도봉구 관내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31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 (미관지구) 지적승인

구분	종별	연경(m)	폭원(m)	면적(m ²)	위치	비고
신설	4	1,180	양측 15	41,100	우이동-상계교간	공원제외준공업지
"	4	880	"	26,400	번동455-창동422	역금회고시제외
"	4	4,000	"	120,000	수유279-미아동구개간	삼양로

별첨도면표시와같음 (도면생략)

공 고

공 략 개 요

◎ 서울특별시 공고제 21 호

도시계획사업 (청사부지및도로 확장) 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87 호 (77.6.13)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공용의 청사부지및 도로확장공사 구간내에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응하고자 이에 공고함
- 2.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한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함
- 3. 관련도시는 용산구청 총무과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

1980.1.

서울특별시

가. 사업장의위치 : 용산구원효로 1 가 26 의 15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공용의청사부지및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규모

- o 청사부지확장 : 1,381.3 평
- o 도로확장 : B = 22 → 30 ~ 32 m
L = 70 m
B = 8 → 8.3 m
L = 140 m

o 하수도

D = 600 m / m

L = 85 m

A = 8.25 a

o 기타 응벽, 담장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용산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및 준공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00 일

바.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 참조

사.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참조

첨부 : 토지조서 1 부

진 물 조 서														
연 번	원				물				조				권리자	
	동 명	지 번	층 별	구 조	진 평	층 별	구 조	진 평	소 유 자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원호로1가	25	지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45.57	지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45.57				서울특별시		
	"		1층	"	357.19	1층	"	357.19						
	"		2"	"	319.43	2"	"	319.43						
	"		3"	"	"	3"	"	"						
	"		4"	"	"	4"	"	"						
	"		5"	"	"	5"	"	"						
	"		옥탑	"	55.17	옥탑	"	55.17						
2	"	25	1층	조적조스라브	7.86	1층	조적조스라브	7.86						
3	"	25	1"	연와조와슴	60	1"	연와조와슴	60						
	"		2"	"	60	2"	"	60						
4	"	26-17	1"	목조와슴	11.04	1"	목조와슴	11.04	원호로1가 26-17	정대규				

번	인		물		수		물		소	유	차	성	명	소	결
	동	지	승	구	조	전	정	형							
5	원효로1가	26-34	1층	복조와좁	9:31	1층	복조와좁	9.31	원효로1가 26-34			조문석			
6	"	26-35	"	"	9	"	"	9	26-35			이병철			
7	"	26-39	"	복조도단	5.28	"	복조도단	5.28	26			김문구			
8	"	"	"	복조와좁	5.27	"	복조와좁	5.27	26-16			유재근			
9	"	26-31	1층	변외조스카보	16.88	1층	변외조스카보	16.88	26-31			박영규			
	"	"	2층	"	15.41	2층	"	15.41	"			"			
10	"	26-16	1층	복조도단	3.7	1층	복조도단	3.7	26-16			박순희			
	"	"	"	복조와좁	12	"	복조와좁	12	"			"			
11	"	26-42	"	"	16.5	"	"	16.5	26-42			조석경			
12	"	26-15	"	"	17.45	"	"	17.45	26-15			오준석			
	"	"	"	"	13.55	"	"	13.55	"			"			
13	"	24-20	"	"	8.22	"	"	8.22	24-20			김창순			

수용대상토지 · 건물조사지

인번	동 명	토 지					소 유 자
		수 용 전			수 용 후		
		지 번	지 적(m ²)	지 목	지 번	지 적(m ²)	
1	원효로1가	25	5,360	대	25	5,360	대 서울특별시
2	"	24-25	17	"	24-25	17	" "
3	"	26-17	43	"	26-17	43	원효로1가 정대규
4	"	26-34	29.4	"	26-34	29.4	26-34 조동희
5	"	26-35	61.2	"	26-35	61.2	26-35 이병철
6	"	26-39	63.8	"	26-39	63.8	26-16 신현부
7	"	26-31	91.6	"	26-31	91.6	26-31 박영규
8	"	26-16	78.3	"	26-16	78.3	26-16 박순희
9	"	26-42	123.3	"	26-42	123.3	26-42 조석경
10	"	26-15	145.5	"	26-15	145.5	26-15 오춘억
11	"	24-20	31.6	"	24-20	31.6	24-20 김창순
12	"	25-2	1,013.1	"	25-2	1,013.1	국 내무부
13	"	25-3	424.8	"	25-3	424.8	" "
14	"	25-6	76.7	"	25-6	76.7	" "
15	"	26-1	6.6	"	26-1	6.6	" 내무부
16	"	26-3	152.1	"	26-3	152.1	" "
17	"	26-4	131.7	"	26-4	131.7	" "
18	"	26-5	72.7	"	26-5	72.7	" "
19	"	26-6	89.2	"	26-6	89.2	" "
20	"	26-7	122.3	"	26-7	122.3	" "
21	"	26-8	92.6	"	26-8	92.6	" "
22	"	26-9	56.2	도	26-9	56.2	" "
23	"	26-10	1,378.5	대	26-10	1,378.5	" "
24	"	26-11	6.6	"	26-11	6.6	" "
25	"	26-12	2.3	"	26-12	2.3	" "
26	"	26-13	102.5	"	26-13	102.5	" "
27	"	26-14	148.8	"	26-14	148.8	" "
28	"	26-30	6.6	"	26-30	6.6	" "
29	"	26-45	9.6	"	26-45	9.6	" 시도시조
30	"	26-46	12.2	"	26-46	12.2	" 시도시조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 호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공람공고

1. 당지가 시행중인 구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길동 360의24호일대

밀집주택가에 대하여 제척코저하며, 일부 공공시설용지의 합리적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34조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코자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본 공고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 및 토지소유자에게 별도로 서류 송달을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갈음한다.

- 사업 계획 변경 내용 -

지 구 명	당 초 시 행 면 적	변 경 시 행 면 적
구로지구	458,297 평	444,210 평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 호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실효공고

전기공사업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실효

조치하고, 전기공사업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 1.25.

서울특별시 장

다 음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제 지	제 2 종 면허일	제 1 종 면허일	실 효 사 유
서울제 2-81	법한기공사	한봉길	성동구자양동산 15-20	78.6.19	80.1.1	전기공사업법제 5조 (1종발급)
4	한국전기(주)	황태영	종로구칭진동 18	"	"	"
8	신우건설산업(주)	최인식	용산구한강로 2가 2-35	"	"	"
11	한일전기건설공사	이상식	동대문구방우동 444-19	"	"	"
12	대우전기공업공사	임희용	성동구충곡동 116-4	"	"	"
24	주일건설(주)	정순택	충 구소공동 111-6	78.6.26	"	"
32	(주)한양건축	김춘권 현종락	도봉구수유동 191-67	"	"	"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개 지	제 2 종 면허일	제 1 종 면허일	면 허 사 유
58	이화전공사	강상옥	관악구노량진 240-46	78.7.3	80.1.1	전기공사업법제 5조 (1종발급)
59	풍전설비(주)	김유영	종로구낙원동 130-1	"	"	"
64	(주)황고우사	황석주	마포구창전동 13-23	78.7.20	"	"
67	(주)황의건설	박창섭	영등포구독산 3동92-8	"	"	"
72	대원산업(주)	강상희	중 구초동 10-12	"	"	"
76	창진건설(주)	백승화	용산구갈월동 10-3	"	"	"
80	근양전기합자회사	이근영	영등포구구로동 910	"	"	"
81	동방기업사	정호덕	성북구성북동 1가 35-1	"	"	"
85	동광전기	이동은	관악구상도동 201-144	"	"	"
89	베영산업(주)	김기우	중구장충동 1가 57-12	"	"	"
93	대성전기공사	이정돈	영등포구시흥동 193-7	"	"	"
94	삼명건설산업(주)	이근주	중구충무로 5가 36-3	"	"	"
96	대원건설	김성남	중구남창동 46-13	"	"	"
97	성진건설(주)	박창운	도봉구미아동 777	"	"	"
98	부영산업(주)	김기현	중구초동 10-1	"	"	"
101	남문건설(주)	주수정	용산구원효로 1가 39-10	"	"	"
103	서광산업(주)	박상진	종로구종로 5가 25-1	"	"	"
110	덕원전기공사	김광복	강서구화곡동 345-61	"	"	"
48	전일기업	전갑식 최병덕	종로구채부동 52	78.7.3	"	"
120	봉선공업(주)	서정인	영등포구신도림 390-7	78.7.20	"	"
121	삼풍건설산업(주)	김동한	중구북창동 104	"	"	"
124	서림산업(주)	김관봉 이대균	중구신당동 217-91	"	"	"
133	영신전기공업(주)	이우규	종로구충인동 72-55	78.7.24	"	"
142	서울종합건설(주)	송현섭	중구다동 58-1	"	"	"
123	(합)영인전기건설	권경민	동대문구신설동 103-2	78.7.20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 호

K S 표시허가취소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제 1 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 S 표시 허
가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0. 1.25.

서울특별시장

- 1. 허가번호 : 제 1552 호
- 2. 허가일자 : 1977.11.19.
- 3. 제조업체명 : 삼보전기공업사
- 4. 소재지 : 서울성동구성수동 2가275-15
- 5. 대표자 : 강인식
- 6. 규격번호 : KSC 4204
- 7. 품명 : 단상유도전동기
- 8. 종류, 등급 : 100V/200V 60Hz
4급분상기동형(개방형)
A종, 0.1kw, 0.2kw
- 9. 취소사유 : KS 표시허가자진반납
- 10. 취소일자 : 1980.1.25.

◎ 서울특별시 공고제 27 호

광전병예방을위한방전단속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리를 배회하는 광전병 예방주사미접종 개(방전)를 단속요자 동법시행규칙 제 10 조 제 1 상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1980. 1.30.

서울특별시장

- 1. 실시목적 : 광전병만연의 미연방지

2. 실시대상 : 사유하고 있는 축견 (이환견) 및 방견

3. 실시지역 : 서울특별시전역

4. 실시기간 : 80.1.30-12.31.

5. 실시방법 : 각구별로 단속반 편성 단속에 임함.

6. 기타사항

가. 역류된 축견은 구청별로 역류 상황을 공고함.

나. 역류된 축견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축주는 역류기간중 (2일간) 광전병 예방주사 필증을 지참 인수하여야 함.

다. 역류기간 중 반환요구가 없는 축견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하여 박살처분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함.

라. 방견 축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36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됨.

◎ 서울특별시 공고제 29 호

분뇨특별수거지역외제외(비수거)지역공고

오물청소법 제 3 조 1 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특별청소지역에서 제외(비수거)되는 분뇨비수거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0. 1.

서울특별시장

구 별	동 명	해 외 지 역	통 명
강 남	내곡동	전 지 역	
	세곡동	"	
	일원동	"	
	삼성동	일부지역 (16-1)	24 통
	도곡동	" (24-5)	1, 2, 3, 4, 5 통
	서초동	" (43-2)	7, 8 통
	양재동	" (15-1)	2 통
강 서	과해동	전 지 역	